

<p>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도로부지로 손실 보상하였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행측에서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을 상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(현황지목인 '대지'로 평가 요구), 지난 2000.1.19 피고인 중구가 1심에서 패소함 <p>□ 판결요지 - 서울행정법원 제1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건명 :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 ('98구 26237) ○ 원고/피고 : 한국외환은행 / 중앙토지수용 위원회, 서울특별시 중구 ○ 주문 :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구는 원고에게 금 14,907,633,630원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<p>□ 행정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의 시공에 의하여 20m 도로 일부로 이용되게 되었으므로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보아 보상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○ 이건 도로는 외환은행 본점사옥 신축시에 원고가 조성하여 건물준공과 함께 사용하게 된 도로이므로 공특별 규정에 의거,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로 보고 인근토지 가격의 3분의1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○ 따라서 판결의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당초의 이의재결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음 <p>□ 조치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 2월 4일 항소 조치 완료 ○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수행변호사로 선임조치 계획 ○ 판결금에 대해서는 원고측으로부터 중구청에 대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바, 추후 시비 지원방안 검토 <p><u>도로부지 보상관련 소송추진 현황</u></p> <p>○ 어린이대공원 ~ 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</p>	<p>라 임료상당의 판결금을 지급하게 된 소송추진현황 보고임</p> <p>□ 계쟁토지 : 성동구 광장동 산81-13(도 10,688m²)</p> <p>□ 사건개요(원고 : 조석재, 피고 : 서울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77.12 준공된 어린이대공원 ~ 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(노폭 50m)에 편입된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(토지주)가 지난 해 5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<p>□ 1심 판결요지 - 우리 시 패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가 수차례 걸쳐 보상금 수령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○ 법률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·사용한 데 대한 임료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649백만원을 지급하라 ※ 서울시 항소표기 : 미불보상대상 토지로 소의 실익이 없음 <p>□ 조치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송촉진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완제일까지의 이자가 연 25%의 고율인 점을 감안, 예비비에서 즉시 지급 조치 ○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미불보상예산을 사용하여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 <p>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□ 검토보고 요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출이유 검토 <p>육교사용료징수조례에서 육교사용 허가시 장기간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 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조례안 제출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</p> 2. 개정조례안 검토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조례안 제9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제2항의 개정안은 육교사용 허가시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육교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
--	--

<p>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므로 육교 사용 허가시 사용기간에 대한 기준범위를 구체화하고 최장 2년 등으로 제한 사용케 하는 것은 시민이용 차원의 홍보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.</p> <p>나. 동 조례안 제3항의 개정안인 "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"을 "서울특별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"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과 점용료 산정기준의 "별표"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 함.</p> <p>IV. 종합의견</p> <p>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육교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행사 홍보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,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조제2항 중 "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"를 "1년의 기간내에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국제행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"로 하고, 동조 제3항 중 "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3호를 적용한 점용료에 해당하는"을 "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별표 중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육교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증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□검토보고 요지</p> <p>1. 제출이유 검토</p> <p>중앙정부의 규제경비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('99. 1.29, '99.4.15) 및 같은 법시행령('99. 6. 8)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증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에 관련한 규정 등을 개정된 법규내용으로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</p> <p>2. 개정조례안 검토</p> <p>가. 조례안 제7조(안전점검의 실시)</p> <p>(1)조례안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안전점검의 실시 외에도 도로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 실시 주기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,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됨.</p> <p>(2)조례안 제7조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 내용 중 안전점검 실시구분의 종류인 용어 명칭을 "일상점검"을 "정기점검"으로, "정기점검"을 "정밀점검"으로 변경하는 것은 '99. 1. 29 개정된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" 제6조제2항의 안전점검 실시 구분 내용과 일치되므로 적합함.</p> <p>(3)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중 "일상점검 : 분기별 1회이상"을 "정기점검 : 반기별 1회이상"으로 하고, 동 조례안 제2호중 "정기점검 : 2년에 1회이상(교량은 매년 1회이상)"을 "정밀점검 : 2년에 1회이상"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은 '99. 6. 8 개정된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" 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시기) 제1호, 제2호의 규정내용과 합치되나</p> <p>○ 현행 조례 제7조(안전점검의 실시) 제1항 제1호, 제2호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협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그 동안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·보강공사와 유지관리로 시설물 대부분이 구조적 기능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지만</p>
---	--